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66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기헌

부승찬 • 전재수 • 손명수

이개호 · 정태호 · 김기표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카드사업자 소속 모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

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2항제2호 삭제 등).

법률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4조의3제2항 각 호"를 각각 "제 14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삭 제></u>
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	2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u>제14조의3제2항 각 호</u> 의 어	1. 제14조의3제2항제1호 또는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2. 등록 당시 <u>제14조의3제2항</u>	2 <u>제14조의3제2항제</u>
<u>각 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
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u> </u>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③ · ④ (생 략)
- 등)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 1. (생략)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 6. (생략)
 - ③ ④ (생 략)

- ③ ④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 3. ~ 6.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